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 개요

정부 주요정책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평가지표 구현

- 일자리 양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 질
 - 직원 근로환경 개선
 - 중소기업 성과공유 도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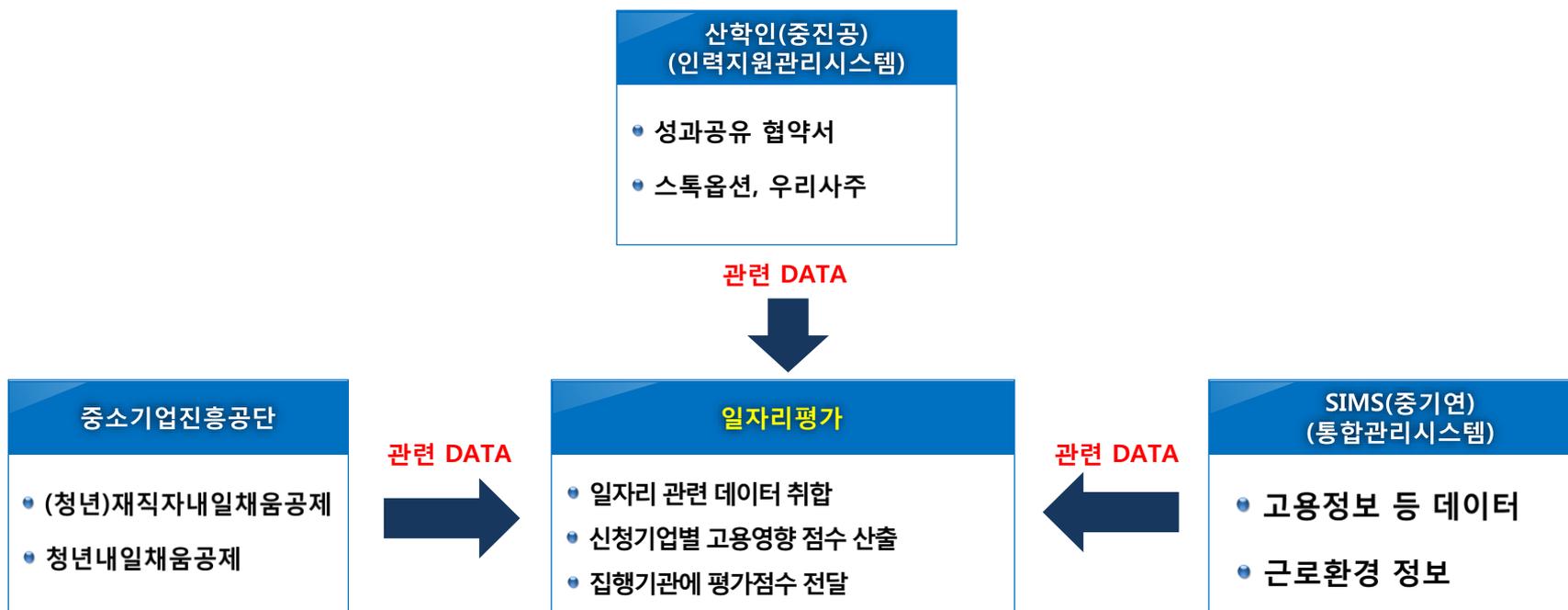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 구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지표 일자리 지표 반영
- 일자리 개선에 노력한 중소기업
우대 및 지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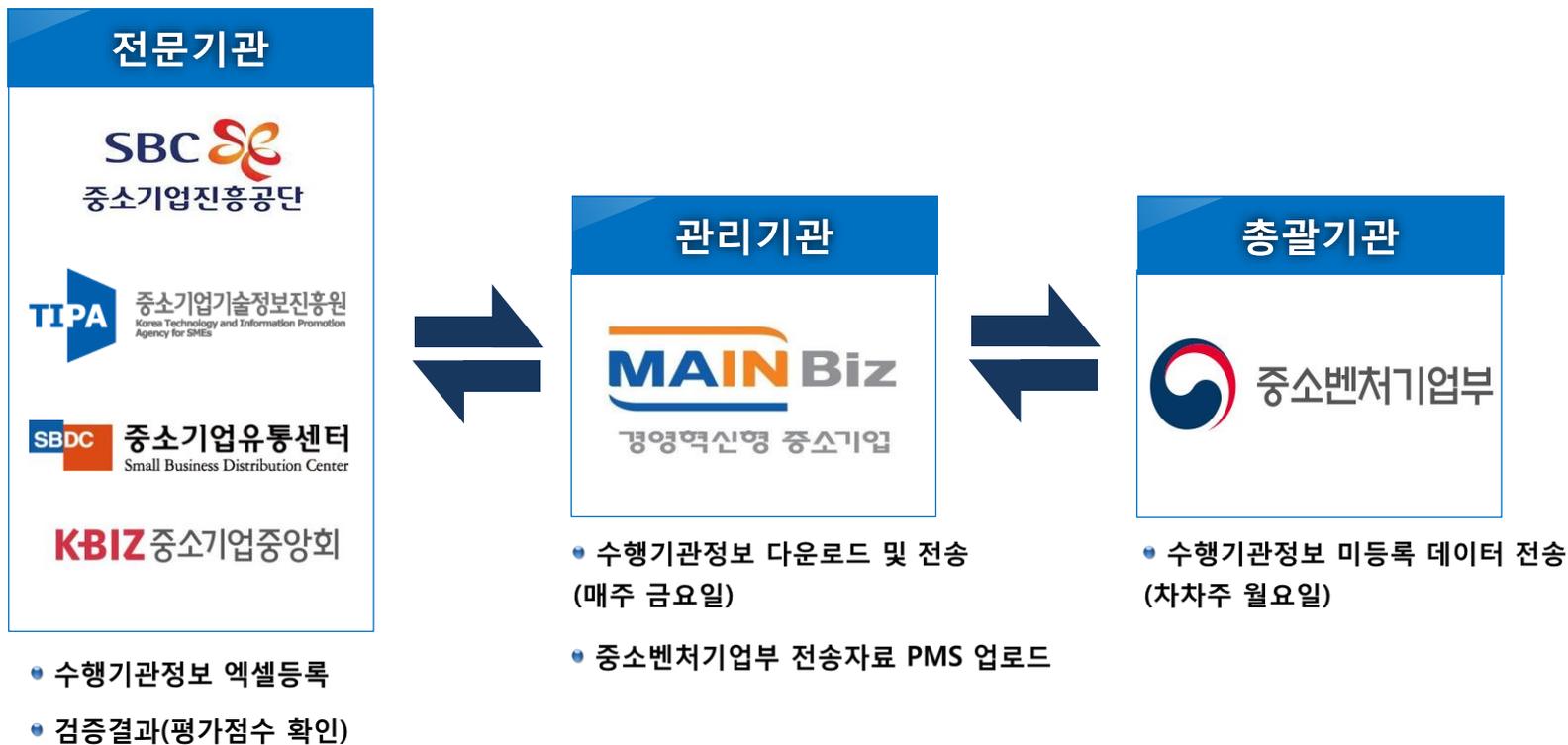
일자리평가적용

- (적용분야)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일자리 양/질 지표 20% 반영
 - (기존)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
 - (개편)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평가(30%)**
- (평가배점)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반영
- (점수산출) 전문기관에서 사업신청시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을 입력하면 해당기업 점수 자동 산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일자리평가점수 필수



지표별 DATA 취합후 점수산출 최대 10~15영업일 소요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지표 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I.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평가항목(고용보험가입자증가)과나항목(고용보험가입자증가율)을각각평가한후더높은평점을반영
II.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내일채움공제 (+5)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10	
II.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III. 고용질서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1 일자리 양(고용증가)

평가항목

- 2017년 12월 VS 2018년 12월 고용증가 인원 또는 증가율
- 증가규모(절대값), 증가율(상대값) 비교해 더 큰 점수 반영

평가기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195만개 기업정보 분석
- 상위 10~60% 기업성과를 평가기준으로 설정

주의사항

- 2019년 창업기업은 신청 직전 달의 근로자수를 기준해 평가
- 2019년 기준 평가수요기업은 증빙자료(고용보험가입명부) 제출

1 일자리 양(고용증가)

[고용증가 평가기준 표]

구 분	평가배점	'17년 종업원 수				
		1~9인	10~49인		50인 이상	
		'17년 대비 '18년 종업원 증가규모				
		증가(명)	증가(명)	증가율(%)	증가(명)	증가율(%)
상위 10%	70점	4	9	50	39	30
상위 20%	60점	3	6	31	22	19
상위 30%	50점	2	4	23	15	14
상위 40%	40점	1	3	18	10	10
고용유지	30점					
고용감소	20점					

- $\text{증가율} = \text{증가인원} / (\text{'17.12월 근로자수}) * 100$,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현재 근로자 8인이 기업이 '17년 근로자 4인에서 '18년 7명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3인, 증가율 75%로 평가점수는 증가인원을 적용해 70점 획득
- (주의) 10~49인 기업의 경우, 증가수 3인 미만, 증가율 18% 미만의 경우 30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증가수 10인 미만, 증가율 10% 미만의 경우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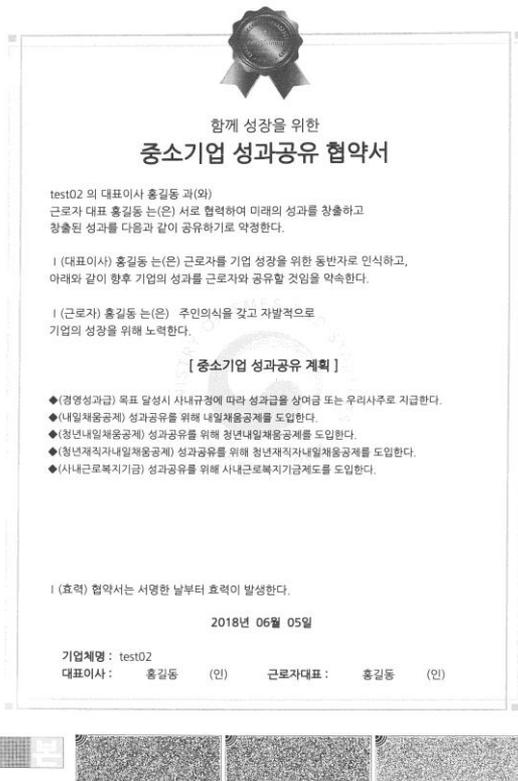
2 일자리 질(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성장후, 경영성과급, 주식 등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에 협약하는 제도(2018년 신설 제도)
* 일자리 질 항목 30점 만점을 받기 위해 이 항목 10점은 필수사항
- (유형)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임금상승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협약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접속해 미래성과공유협약 체결

2 일자리 질(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협약)

미래성과공유 유형 6가지 중 하나이상 하겠다는 협약서 등록!



3 일자리 질(성과공유 - 내일채움공제 등)

내일채움공제 등

- (인정유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방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 관할 고용복지센터

우리사주, 스톡옵션

- (우리사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 설립통지확인서' 등 증빙자료 업로드
- (스톡옵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 증빙자료 업로드

3 일자리 질(성과공유 - 내일채움공제 등)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번호		
명칭		설립통지일
대표자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 성명		신청일

위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이 선택권이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주 로 한다.

제 2 조 【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 3 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 4 조 【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은 금 ○○○원으로 한다.

제 5 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1.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2) 주식분할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2.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행사기간】

선택권은 20 년 월 일 이후 20 년 월 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 【행사방법 및 절차】

1.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

4 일자리 질(근로환경)

정규직 전환

- (개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 등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켜 고용부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수령
- (증빙서류)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령증(관할 복지센터 문의)

일자리 함께하기

- (개요)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선정기업
- (증빙서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증(관할 복지센터 문의)

4 일자리 질(근로환경)

가족친화인증 등

- (개요)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각종 인증 획득 기업
- (증빙서류) 상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증명가능한 인증발급서 및 선정서

구분	인증 유형	관련기관
1	가족친화인증기업	한국경영인증원
2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3	노사문화우수기업	관할지방고용노동청
4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5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
6	직무발명보상기업	특허청

6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대상 사업



연번	분야	세부사업	내역사업
1	R&D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협력
2	R&D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도약협력
3	R&D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전략협력
4	R&D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
5	R&D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
6	R&D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7	R&D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8	R&D	상용화기술개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9	R&D	상용화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
10	R&D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11	R&D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300
12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 기술개발
13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14	R&D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15	기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역량강화
16	기타	중소기업 재기지원	중소기업 재도약지원(구개선 계화수립 지원)
17	기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18	수출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성공패키지
19	수출	수출지원기반활용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20	수출	수출지원기반활용	아시아하이웨이
21	수출	수출지원기반활용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22	수출	수출지원기반활용	단체바우처전시회
23	수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
24	수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25	수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6	수출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인큐베이터
27	수출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
28	R&D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29	R&D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연고산업육성
30	기타	지역특화산업육성	시도기업지원서비스(지역스타기업육성)
31	기타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